

「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」 사업대상자 모집공고

식품기업의 국산원료 사용 촉진 및 기업의 경영노하우를 농업계에 전달하여 식품기업과 농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『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』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6년 2월 6일

(재)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1. 사업내용

- 가. 사업목적 :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도내 원료 농산물 생산·납품 농가 및 업체를 발굴·지원하고,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
- 나. 사업기간 : 2026년 3월 ~ 12월
- 다. 선정규모 : 25개소 정도
- 라. 지원대상 : 도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단체(생산지원) 또는 이를 활용하는 식품·외식(이용지원) 중소기업
- 마. 지원내용
 - 1) 생산지원(생산자단체) : 교육·컨설팅,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, 공동 장비·시설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 - 2) 이용지원(중소 식품·외식기업) :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, 판촉·홍보, 신제품 개발, 농산물 운송·저장 등 필요 경비 지원

II 사업 주요 내용

1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(생산자단체)

□ (신청대상) 식품·외식업체와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(5농가 이상)

< 지원대상 요건 >

- ① **대상:**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)
*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
- ② **계약유형:** 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, 생산자단체*-제3자(지역농협 등)-식품·외식업체
*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(법인인 경우 임직원)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
 - (식품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, 제5호나목4(식품소분·판매업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)
 - (외식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- ③ **거래금액:** 지원액(국비·지방비의 합)의 3배 이상
- ④ **지원제한:** 농협, 6차산업인증자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가능한 사업자는 생산지원 또는 이용지원 중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 가능
- ⑤ **지원기간:**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(3년) 한도 내 지원 가능
 - **추가지원:** ①상생협력 우수사례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업체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(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·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% 이상 증가한 업체)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
 - **최대지원 횟수:** 추가 지원 등을 모두 합하여 총 8회까지만 가능

□ (지원규모)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

- ① **예산:** 사업비 기준 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- ② **지원한도** ※ 국비·지방비의 합
 -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
 -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

□ (지원범위)

- ① **교육 및 컨설팅**: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,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의 비용
- ② **품질관리**: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(GAP 등), 품질·안전성검사, 위탁관리, 종자·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(차액), 시범포* 조성 등의 비용
* (요건) 시범포 식별 표지판 설치, 사업기간(1년) 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
- (지원범위)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비 및 생산요소 구입비 지원(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 증빙 필요)
- ③ **영농환경 개선**: 계약재배 관련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, 재배지역 환경 정리, 농자재 보관·수거함 제작 등 비용
- ④ **공동장비 및 시설 임차·관리비**: 계약재배 관련 농산물 및 농자재 보관·저장을 위한 창고·사일로 등의 공동 시설, 파종·경작·방제·수확·운송용 공동장비(운송비 포함) 등을 임차·관리(정비 등)하는 비용
* (임차비 예시) 저온/냉동 저장고, 물류기기(팔레트, P박스), 운송차량 임차(생산자단체→식품기업, 개별생산자→생산자단체), 공동수확장비 등
- 단, 자산성 장비를 보조금으로 장기 임차 후, 최종 구매하는 건은 지원 불가
- ⑤ **기타**: 식품업체 연계 관련 협의회, 간담회 등의 소요 비용

□ (선정절차) 지자체별 기준을 설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

- (절차) 세부사업계획 수립·제출(단체) →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선정(지자체) → 최종 대상자 확정 및 통보(농식품부)
- (기준) ①연계의 효과성(30%), ②연계의 지속성(30%), ③사업계획의 적절성(20%), ④향후 파급효과(20%) 범위 내 지자체별 기준 설정

< 선정기준 고려사항 >

- ① 연계의 효과성 :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·비금전적 효과를 평가
 - ② 연계의 지속성 :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
 - ③ 계획의 적절성 :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
 - ④ 파급효과 :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한지,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를 평가
- ※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,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

- ☐ (신청 대상) 농가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·외식업체

< 지원대상 요건 >

- ① **대상:** 식품·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
 - (식품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, 제5호나목4)(식품소분·판매업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)
 - (외식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- ② **계약유형:** 농가·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, 농가·생산자단체-제3자(지역농협 등)-식품·외식업체
 - * 지원 대상 기업의 임직원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는 제외. 다만, 그 비율이 50% 미만인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
 - * 농가와 계약재배하는 경우에는 최소 5농가 이상
- ③ **거래금액:** 지원액(국비·지방비의 합)의 3배 이상
- ④ **지원제한:** 농협, 6차산업인증자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가능한 사업자는 생산지원 또는 이용지원 중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 가능
- ⑤ **지원기간:**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(3년) 한도 내 지원 가능
 - **추가지원:** ①상생협력 우수사례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업체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(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·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% 이상 증가한 업체)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
 - **최대지원 횟수:** 추가 지원 등을 모두 합하여 총 8회까지만 가능

- ☐ (지원 규모) 실비 지원

① **예산부담:** 사업비 기준 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
② **지원한도(국비·지방비 합):** 개소당 최대 20백만원

- 단,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개소당 최대 40백만원까지, 신제품개발 시에는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

□ (지원범위)

※ 가공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

- ① **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** :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·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, 업무 위탁, 시험·분석, 검수 등의 비용

*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: 1천만원 한도 내 지원(국비·지방비의 합 기준), 다만, 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불인정

→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관리 전문성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, 동 사업의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·양·내용 기록 증빙 필요

- ② **교육 및 컨설팅** : 식품·외식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, 컨설팅 등의 비용

- ③ **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** : 계약금 지급에 따른 이자(계약금 1억원 한도로,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. 계약금 지급 시점~납품 시점까지 지원),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*

* 단, 농식품부 '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(aT 수행, 참고 1)'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

- ④ **판촉·홍보** :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과 관련된 기업 홍보, 지역 농산물(광역지자체) 이용 강조 제품 홍보(포장재 동판 제작, 판촉행사 등)

- ⑤ **시설 및 장비 임차·관리비** :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·보관·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공동시설이나 장비(운송비 포함)를 임차·관리(정비 등)하는 비용

* 필요 시 시설·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

* (임차비 예시) 저온/냉동 저장고 임차, 공동 운송용 팔레트, 운반용 지게차, 운송장비 임차(농가→식품기업), 등

- 단, 자산성 장비를 보조금으로 장기 임차 후, 최종 구매하는 건은 지원 불가

⑥ 신제품 개발: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·검사·인증 등의 비용

* 신제품 개발 항목 선택 시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(국비·지방비의 합 기준,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적용 제외)

* 해당 차수(연도) 지원 종료 시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(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정산 불가 또는 해당 지원금액 환수)

* 신제품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은 사업지원연도 내(1~12월)

⑦ 기타 : 협의회, 간담회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

□ (선정절차) 지자체별 기준을 설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

○ (절차) 세부사업계획 수립·제출(단체) →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선정(지자체) → 최종 대상자 확정 및 통보(농식품부)

○ (기준) ①연계의 효과성(30%), ②연계의 지속성(30%), ③사업계획의 적절성(20%), ④향후 파급효과(20%) 범위 내 지자체별 기준 설정

< 선정기준 고려사항 >

- ① 연계의 효과성 :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·비금전적 효과를 평가
 - ② 연계의 지속성 :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
 - ③ 계획의 적절성 :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
 - ④ 파급효과 :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한지,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를 평가
- ※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,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

<참고> 예산 집행 기준

※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(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)

항목	내역	지급기준	비고
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	인건비, 업무위탁비, 시험분석비 등	실비	계약재배 이행상황 점검, 품질안전·관리 *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: 1천만원 한도 내 지원(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),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'재배 품질 관리'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·양·내용 기록 증빙 필요
교육 및 컨설팅	강사비, 교육참가비, 자문료 등	실비 (강사비는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)	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·컨설팅 등
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	이자, 보험료	실비	계약재배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*, 구매이행 보증보험료** * 계약금 1억원 한도,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. 계약금 지급 시점~납품 시점까지 지원 / 계약서에 계약금 명시, 지급내역 등 증빙 **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(참고1)(정산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요청(지자체→농식품부))
관측·홍보	관측비 홍보비	실비	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·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, 지역(광역·지자체) 농산물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* * 포장재 제작의 경우에는 동판제작만 정산 가능
시설·장비	임차·관리비	실비	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농산물 규격 등 충족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·보관·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·장비 * 필요 시 시설·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
신제품 개발	시험분석비,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	실비	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* 신제품 개발 목적으로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(국비·지방비의 합) * 해당연도 지원 종료시까지 품목제조보고 완료 필수
기타	행사비	실비	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
추가 증빙	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	-	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붙임6, 필수 제출) *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, 거래송장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, 사진 등 제출

Ⅲ 추진일정

1. 선정규모 :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 25개 정도

2. 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6. 2. 6.(금) ~ 2. 23.(월) 18:00까지

나.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, 이메일

※단, 방문, 우편 접수는 공휴일(토요일 포함)을 제외한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다. 접 수 처 : (재)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

- 주 소 : 경북 예천군 호명읍 수변로 125 서진타워 5층
- 문의처 : 054 - 650 - 1191
- 전자우편 : kyu322@gbfood.or.kr (시장개척담당 이상규 대리)

신청서 및 구비서류

(붙임1파일. 양식3_사업신청 체크리스트_의 제출서류 부분 참고)

(공통_신청서) _ 붙임1. 활용

- ① 사업신청서 및 양식 1~3
- ② 확약서(서약서)

(생산지원)

- ① 사업자등록증(작목반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생산자 단체는 고유번호증)
- ② 법인 등기부등본(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 미제출)
- ③ 영업신고증(계약 대상 식품·외식기업)
- ④ 가맹본부확인서류(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)
- ⑤ 법인(단체)명의 통장 사본
- ⑥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
- ⑦ 재배 계약서 사본(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)
- ⑧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
- ⑨ 사업계획에 대한 견적서(계약서) 또는 산출내역서
- ⑩ 기타 증빙서류

(이용지원)

- ① 사업자등록증
- ② 영업신고증
- ③ 가맹본부확인서류(프랜차이즈 가맹본부만 해당)
- ④ 법인 등기부등본
- ⑤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- ⑥ 생산자 확인 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생산자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)
- ⑦ 법인(단체)명의 통장 사본
- ⑧ 계약재배지 관련 토지소유 또는 임대 증명 서류
- ⑨ 재배 계약서 사본(3자 계약일 경우 관련 계약서 포함)
- ⑩ 최근 2개년 재무상태표
- ⑪ 사업계획에 대한 견적서(계약서) 또는 산출내역서
- ⑫ 기타 증빙서류

※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인정

3. 심사일정 안내

○ 서류심사 : '26. 2. 25일 주간

-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 발표, 지역 상생협력 협의회에서 서류심사 (사업계획서 등) 실시

* 서류검토(자격요건 등)후 부적격자는 서류심사 제외

**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심사일 별도 통보 예정

○ 현장평가 : '26. 3. 5일 주간

- 계약재배 현황, 시설, 인력 등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 평가

* 신청자 요건 등에 따라 현장 평가 생략 할 수 있음

○ 최종 확정 결과 통보는 개별 통지

4. 기타사항

- 심사과정 중 필요시 추가로 서류를 제출·요구 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현장평가지 준비 등 심사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.

- 신청자는 공고문을 숙지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
- 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목적과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유사중복사업은 선정심사 시 제외될 수 있음

-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“해당 항목 0점 처리” 등 어떠한 행정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 끝.